

영국 법원, 포경업 반대시위 펼친
십대 소녀 신원공개보도
금지 판결 내려

영국 Westminster시 하급법원의 Quentin Purdy 판사는 『아이와 청소년에 관한 법률』 1933의 39 절을 근거로 주영 일본대사관 내에서 포경업 반대시위 중에 체포된 14세 소녀의 신원을 언론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법정 밖에 있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 응하고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까지 취한 데다 이들이 익명 처리되거나 긍정적으로 포장되어 보도되길 원치 않는다고 변호사를 통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다.

Quentin Purdy 판사는 “이 십대 소녀가 하급법원에 출두한 것은 단지 이 소녀가 성인인 아버지와 공동 기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성인인 아버지와 공동 기소되지 않았다면 이 소녀는 자신의 익명성이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소년법원에 출두했을 것”이라며 소녀의 신원에 대한 공개보도 금지 명령을 백지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녀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 1월, 주영 일본대사관 울타리에 케이블 끈으로 몸을 묶은 채 영국 남쪽 해안에서 포경 조사를 하는 일본 탐험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불법침입죄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소녀의 신원은 각종 미디어는 물론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공개된 바 있다.

(Press Gazette 2008년 2월 11일자) □

‘Big Brother’ 쇼 주인공,
언론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영국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인 ‘Big Brother’ 시즌 4의 주연 Lisa Jaynes(39세, 모델)이 2006년 5월에 발행된 잡지 「Love it!」과 「News of the World」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Lisa Jaynes는 문제의 매체들이 자신을 “‘Big Brother’ 쇼의 늙은 중년남자 Lisa, James Heitt와의 데이트 중에 가짜 젓가슴이 빠져나왔다”라고 표현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Big Brother’ 쇼에서 여장 남자로 묘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Lisa Jaynes는 기사에 등장한 “성전환 참가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은 자신이 “실제로는 남자이면서 여자나 성전환자인 체 했다는 걸 뜻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ews Magazines」사와 「News Group Newspapers」 측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축하면서 문제가 된 어구는 적절한 맥락에서 쓰였으므로 Lisa Jaynes의 억지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정까지 간 이 사건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 판사 Eady는 지난 4월, Lisa Jayne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ady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문제가 된 어구들이 Lisa Jaynes가 주장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Eady 판사는 “원고 Lisa Jaynes가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Lisa Jaynes는 그녀의 변호사 Adrian Davies와 함께 항소법원에 나와 이번 사건의 상고를 요청했다. Lisa Jaynes의 변호사는 “Eady 판사

의 판결은 ‘늙은 중년남자’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만 국한시킨 것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은 Eady 판사의 판결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목요일 오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8년 1월 28일자) □

인터넷상 표현에 대해 상당성 인정, 명예훼손 부정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라면 체인점을 중상하는 문장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회사원 橋爪研吾 피고(36)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인터넷상 개인의 표현행위에 관해 기존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새로운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을 적용,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조사만 있다면 오신(誤信)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2002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라면 체인점이 켈트 종교집단과 일체(一?)인 것처럼 작성한 문장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용의 진실성을 부정한 다음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발신한 정보의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의 정보 발신은 반드시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의거할 필요는 없으며 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발신했든가 ②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맞는 조사로 진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신했을 때 비로소 명예훼손이 추궁된다”고 판

시했다.

또한 “인터넷의 표현행위에 의한 피해자는 용이하게 가해자에게 반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기존 매스미디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상의 표현행위가 자기검열로 위축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고 헌법 21조가 요청하는 정보나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쿄지검은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3월 18일자) □

여배우 Sienna Miller, 자신의 누드를 몰래 촬영한 사진기자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여배우 Sienna Miller는 최근 출연 영화 ‘Hippie Hip-pie Shake’ 비공개 촬영 중 자신의 탈의 장면을 찍은 사진기자 Warren Richardson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Sienna Miller는 「News Group Newspapers」와 「Xposure」로부터 다시는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37,500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

Sienna Miller의 변호사인 David Sherborne는 “Sienna Miller가 옷을 벗고 호수에 들어가는 장면을 몰래 포착한, 매우 불쾌한 사진들로 인해 Sienna Miller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David Sherborne은 “사진기자 Warren Richardson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고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Warren Richardson이 Sienna Miller의 동의 없이 망원렌즈를 사용해 문제의 사진들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David Sherborne은 “Sienna Miller의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된 것은 그녀의 권리가 명백하게 침해된 것뿐만 아니라 그 사진들이 촬영된 맥락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Sinenna Miller는 이전부터 늘 괴롭힘과 인격에 대한 침해를 감내해야 했는데 그녀의 사진을 찍기 위해 무서울 정도로 집착해 달려들던 파파라치들로 인해 특히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던 런던 고등법원 Eady 판사는 Sinenna Miller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피고에게 촬영된 사진들을 Sinenna Miller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Press Gazette 2008년 1월 17일자) □

비평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놓고 영국 법원 고심 중

레스토랑 비평 기사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The Irish News」지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될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전직 택시 기사 Ciaman Convery이 1991년에 개업한 식당 ‘Goodfellas’를 「The Irish News」지의 음식평론가 Caroline Workman이 2000년 8월 칼럼을 통해 비판한 것으로 인해 촉발됐다. 당시 음식평론가 Caroline Workman은 West Belfast의 Kennedy Way 지역에 있는 식당들의 음식과 음료 품질 및 직원의 서비스 그리고 담배연기 자욱한 실내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칼럼을 작성했다. Caroline Workman는 ‘Goodfellas’에 대해 별 다섯 개 중 하나를 매기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실망

스런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Goodfellas’주인 Ciaman Convery는 “문제의 비평이 난도질에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그 비평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The Irish News」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The Irish News」지 측은 즉각 상고했다. 「The Irish News」지 측 왕실고문변호사인 Lest경은 “악의적이거나 부정직한 목적이 없는 한, 어떠한 평가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Lest경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것은 비평가가 극장이나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난 뒤에 별 하나건 다섯 개건 ‘평가’를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est경은 “악의나 부정직한 의도 없이 평가를 했다는 것까지 (늘) 증명해야 한다면, 음식이나 극장 안내 책자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내리건 간에 매번 비평가는 불쌍사나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st경은 “성공적인 변론이 이루어졌으므로 「The Irish News」지가 ‘Goodfellas’의 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25,000파운드의 배상금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석판사 Brian Kerr경과 두 명의 배석판사는 이틀 간의 난상토론 끝에 판결을 유보했다. 법원 측은 이번 사건의 뼈대는 사실과 논평의 차이점을 두고 오고 간 다양한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비평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Press Gazette 2008년 2월 4일자) □

누군가가 죽어야 끝날 유명 인사에 대한 지나친 사진 취재경쟁

파파라치 Nick Stem은 사진기자들이 팝 가수 Britney Spears의 정신질환을 취재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Splash News」를 사직했다.

30여 대 가량의 취재차량이 Britney Spears를 몇 주간 따라다니는 가운데, 파파라치 Stem은 이런 상황에서 Britney Spears의 사진을 더 이상 찍을 수 없다고 「Splash News」 측에 말했으며 「Splash News」 측은 곧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First News」라는 언론사를 경영하기도 했던 Stem은 「Splash News」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널리스트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되어야 하는데 Britney Spears 관련 취재는 도를 넘어섰고 너무 격렬하다”고 말했다. Stem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20 ~ 30대의 차량이 신호등도 무시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Britney Spears가 죽든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가 죽든지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Stem은 “우리를 이룬 사진기자들이 다른 사진기자 차량을 막아 버리거나 도로 밖으로 쫓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사진기자들이 접근하는 차량을 향해 역주행하는 것도 용인되어 가는 실정”이라며 “Britney Spears가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다면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Stem은 “영국에서 거의 15년 간 일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사진기자 무리들과 일

하는 데 익숙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LA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숙련된 사진기자들이 아니며 저널리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들의 취재 방식과 행동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Stem은 「Splash News」에 대해 “잘 운영되는 매우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묘사하면서 「Splash News」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다고 밝혔다. Stem은 또한 “「Splash News」가 영리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며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Stem은 “LA에서 다시 고용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LA, New York, London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잘 했다’는 내용의 격려와 지지를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받았다”고 밝히고 “언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tem은 “LA의 경험들과 비교해 보면 영국 PCC가 근 15년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며 “LA는 거의 무정부 상태 같아서 사진기자들이 사진을 얻기 위해서 사적인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는 모습은 무척 놀랍다. Britney Spears 경우야 두말할 나위 없다”고 말했다.

한편 「Splash News」의 공동 설립자인 Gary Morgan은 「Press Gazette」와의 인터뷰에서 “Britney Spears 관련 취재는 통제 불능이다. 사진기자라고 할 수도 없는 아마추어 사진기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Gary Morgan은 “아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Britney Spears의 사진을 촬영할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앞서 그 사진을 웹에 올리지만 하면 그 사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진이 되고 만다. 최초 사진을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 그리고 인터넷의 기민함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Gary Morgan은 유명 인사들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이유에 대해 '무법자'에 가까운 사진기자들이 광각렌즈를 사용해 피사체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Gary Morgan은 "LA가 경찰이 유명 인사를 찍는 사진기자들에게 취재 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유명 인사를 촬영하는 사진가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Gary Morgan은 최근 몇 주 동안 벌어진 Britney Spears 취재 상황에 대해 "Britney Spears는 진정한 뉴스거리이다. 「AP」, 「Reuters」, 「The LA Times」, 「Sky」 등의 우수 언론사들이 모두 Britney의 집 밖에서 취재하려고 대기 중이다"라고 말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사거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 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Britney Spears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Monica Lewinsky를 귀찮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Britney가 Monica보다 좀 더 거물이라는 사실 외에는 두 사람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며 최근의 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Press Gazette 2008년 2월 11일자) □

체포 실명보도 명예훼손 안 된다

- 일본 那覇지방법원 판결 -

일본 오끼나와현(沖繩縣)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된 공립중학교의 남성교사가 자신의 체포상황을 실명으로 보도한 NHK와 오끼나

와현의 민간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那覇(나하)지법 민사 제2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실명보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2007년 3월 소년에게 문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어 11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NHK와 琉球방송, 琉球朝日방송, 오끼나와TV 등 4사는 원고의 체포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도가 경찰발표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물리쳤다. 실명보도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고 일반 공무원보다 한층 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립 학교 교사의 직무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상응한 합리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는 경찰에 의한 실명발표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현(縣)당국 역시 제소한 상태.

(『신문협회보』 2008년 3월 25일자) □

경찰취재를 유일한 근거로 「혐의」를 보도한 두 신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일본 사이다마현(埼玉縣)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과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 민사 제28부는 지난 2월 19일 명예훼손을 인정, 『요미우리』 측에 220만 엔의 손해배상액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동지 2004년 5월 26일자 조·

석간 기사와 27일자 조간 사설인데, 원고가 일본에서 ‘알카에다’의 활동자금을 조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기관의 견해 등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경찰간부로부터 취재한 내용만을 거의 유일한 근거로 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요미우리』 측은 항고했다.

한편 『産經신문』도 같은 사건으로 피소되어 지난해 12월 10일 도쿄지법 민사 제30부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330만 엔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언도받고 항소했다. 동 신문은 2004년 5월 27일자 조간에서 “알카에다 잠복 지하은행에서 테러자금 간부와 접촉남(男) 체포, 10억 원 해외송금”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진실성이 있다”는 『産經』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취재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었던 혐의는 유동적인 것으로서 단정적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농후한 혐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문협회보』 2008년 2월 12일자, 3월 25일자) □

부모를 딸의 살해범으로 보도한 영국신문, 1면에 사죄기사 게재

- 화해금도 55만 파운드(약 10억 원)로 파격적 -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 4개 신문은 지난 3월 하순, 행방불명 중인 딸의 부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1면의 거의 전부를 할애한 사죄광고를 파격적으로 게재했다. 발행원인 「익스프레스 뉴스페이퍼즈」사가 지불하는 화해금도 55만 파운드(약 10억 원)

로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화해금으로는 파격적인 것이다. 이 금액은 1인당 25만 파운드를 상한으로 하고 있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액보다 크게 높다.

이번의 사죄기사는 지난해 5월, 포르투갈 휴양지에서 행방불명된 마데린 맥간(당시 4세)양을 둘러싼 보도에 대한 것이다. 4개 신문 중 『데일리 익스프레스』지는 1면 거의 전부를 사죄기사로 할애하여 “근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데린 양의 부모가 딸의 살해자라는 보도를 되풀이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마데린 양 사건의 발생 당시, 마데린 양의 부모는 연일 미디어에 등장해 영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까지 딸을 찾기 위한 수색 협조를 호소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BBC 등 방송국은 유명 캐스터를 현지에 파견, 연일 실황중계를 했으며 고급지를 포함한 영국의 각 신문은 이 사건을 연일 1면에 게재했다. 발행부수를 늘리고 시청률을 높이려는 미디어 측의 의도와 노출도를 높여 딸을 찾으려는 마데린 양 부모의 생각이 합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종료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미디어들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얻은 정보나 억측에 근거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해 9월, 지역경찰이 마데린 양의 부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기 시작하자, 이를 계기로 언론의 마데린 양 부모에 대한 취급이 크게 달라졌으며,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보도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2월까지 4개 신문은 ‘양친이 딸의 시체를 유기했다’, ‘채무변제 때문에 살해했다’는 등의 기사를 100개 이상 게재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4월 1일자) □